## 질 의 서

## 1. 질의요지

질의1. 문화재청 예규 제221호 및 행정안전부예규 제124호의 문화재수리 종합 심사(평가)낙찰자 결정기준의 보유 기술자 및 기능자 능력 심사기준 점수 산정방식에 따르면, "상위 경력 보유 기술자 또는 기능자 인원이 1인을 초과하는 경우, 하위경력 인원수로 인정한다"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. 다만, 하위경력으로의 하향조정 가능 범위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없는바, 그 범위에 대하여(하위경력으로의 2단계 이상 하향조정 가능여부) 질의 드립니다.

## 표1. 보유 기술자 및 기능자 능력 심사 기준

□ 평가기준 점수 : ∑ 경력계수 × 등급계수					
경력계수	15년이상	7년이상 15년미만		7년미만	
(해당자격 취득년수)	2.0	1.5		1.0	
등급계수 (경력인원수 가중치)	2명이상	10.0	1명	8.0	
※ 상위 경력 보유기술자(기능자) 인원이 1인을 초과하는 경우, 하위 경력 인원수로 인정					

사례1) 해당자격 취득 년수 15년 이상 4명, 7년 이상 1명, 7년 미만 0명일 경우,

A안) 2.0×10 + 1.5×10 + 1×0 = 35

⇒ 경력계수 2.0이 3인, 1.5 2인으로 산정함

B안) 2.0×10 + 1.5×10 + 1.0×8 = 43

⇒ 경력계수 2.0이 2인, 1.5 2인, 1.0 1인으로 산정함

사례2) 해당자격 취득 년수 15년 이상 6명, 7년 이상 0명, 7년 미만 0명일 경우,

A악) 2.0×10 + 1.5×10 + 1×0 = 35

⇒ 경력계수 2.0이 3인, 1.5 3인으로 산정함

 $B_{1}^{\circ}$  2.0×10 + 1.5×10 + 1.0×10 = 45

⇒ 경력계수 2.0이 2인, 1.5 2인, 1.0 2인으로 산정함

※ 입찰참가자 전원 B안으로 자기평가 함

## 답 변

- □ 질의1(하위경력으로의 조정 가능 법위에 대한 질의)
  - 보유 기술자 및 기능자 능력 심사는 수리업체가 다양화되고 고른 분포의 경력기간을 가진 기술자 및 기능자를 구성함으로써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조직 인적 역량을 보유하고 있는가를 평가하는 심사항목
  - 사례1(해당자격 취득 년수 15년 이상 4명, 7년 이상 1명, 7년 미만 0명 일 경우)
  - 요청기관의 의견 중 A안이 타당
  - 사례2(해당자격 취득 년수 15년 이상 6명, 7년 이상 0명, 7년 미만 0명 일 경우)
  - 요청기관의 의견 중 A안이 타당